

# 외국대학과의 파견 및 교환학생 운영 규정

(제정) 2012-10-22 규정 제321호  
(개정) 2016-04-25 규정 제397호  
(개정) 2017-02-21 규정 제440호

##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교류협약대학(교)과의 학생교류(교환학생)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본 대학교 학생이 교류협약대학(교)에 수학하는 경우와 외국인 학생이 본 대학의 전문학사과정 및 학사과정에 수학하는 학생에게 적용한다. <개정 2016.4.25.>

제3조(용어의 정의) ①외국인 학생이라 함은 학생교류(교환학생)협약에 의거 본 대학교에서 수학하는 교류협약대학(교)의 학생을 말한다. <개정 2016.4.25.>

② 유학생이라 함은 학생교류협약에 의거 교류협약대학(교)에 유학하여 수학하는 본교의 학생을 말한다.

## 제 2 장 외국인 학생의 본교 수학

제4조(수학자격) 외국인 학생이 이 대학에서 수학할 수 있는 자격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본 대학교에서 요구하는 언어 능력을 갖춘 자 (단, 1년 이상 수학하고자 하는 경우는 1년 내에 한국어 능력시험(Topik)4급 이상인 자) <개정 2016.4.25.>
2. 해외여행에 결격 사유가 없는 자
3. 그 외 자격은 별도로 정한다.

제5조(수학기간) 수학기간은 양교 협약에 의한다. 다만, 수학기간이 종료된 후 본 대학교에서 계속 수학하고자 하는 경우는 본 대학교 총장의 승인을 받아 연장 할 수 있다.<개정 2016.4.25.>

제6조(제출서류) 본 대학교에서 수학하고자 하는 외국인 학생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6.4.25.>

1. 지원서(소정양식) 1부
2. 재학증명서 1부
3. 성적증명서 1부
4. 건강진단서 1부

5. 학교장 추천서 1부

6. 기타 필요한 서류

제7조(등록 및 경비 등) ① 외국인 교환 학생은 매학기 소정기일 이내에 자신이 파견한 대학에 등록하여야 한다.

② 외국인 학생은 본교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해당 지도교수의 지도를 받아 매학기 수강 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8조(학점인정 등) ① 취득한 학점은 본교의 학칙 및 학칙시행세칙에 의거 인정한다.

② 외국인 학생의 성적 등 필요한 사항을 기록 유지하기 위하여 학적부를 비치하여야 한다.

제9조(상벌) 외국인 학생에 대한 포상 및 징계절차는 본 대학교 학생상벌규정을 따르며, 학칙 위배 시에는 학생지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징계할 수 있다.<개정 2016.4.25.>

### 제 3 장 본교 학생의 외국대학 수학

제10조(지원자격) 교류협약대학(교)에 유학하고자 하는 학생은 학문적 능력과 진취성을 가진 학생으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1. 해당대학에서 수학이 가능할 정도의 외국어 능력을 갖춘 자
2. 전체 평점 평균 성적이 3.0 이상인 자
3. 소속 학과 학과장의 추천을 받은 자
4. 해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5. 그 외 자격은 별도로 정한다.

제11조(제출서류) 외국대학(교)에 유학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서류를 제출 하여야 한다.

1. 지원서(소정양식) 1부
2. 재학증명서 1부
3. 성적증명서 1부
4. 학과장 추천서 1부
5. 서약서 1부
6. 기타 필요한 서류는 별도로 정한다.

제12조(선발) 최종 선발은 소정의 자격을 갖춘 지원자 중 교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결정한다.

제13조(공고) 총장은 유학생 선발계획이 있을 시에는 지원 자격, 선발인원, 선발시기, 제출 서류, 기타 선발에 필요한 사항 등을 명시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제14조(등록 및 경비) 본 대학교 학생이 교류협약대학(교)에서 수학하고자 할 때에는 그와

관련된 경비는 본 대학교 등록 절차에 따라 매학기 등록금 및 기타 경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6.4.25.>

제15조(학점의 인정 등) 교류협약대학(교)에서 취득한 학점은 학칙 제25조에 의거하여 졸업에 필요한 학점의 2분의 1 범위 안에서 인정하며, 학기당 24학점 범위 내에서 학점을 인정하되 수학 학기는 이중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제16조(교과목의 이수) ① 교류협약대학(교)에서 이수한 교육과정은 본교 당해 학기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 단, 학점인정은 교류대학에서 발행한 공식 성적 증명서에 기재된 학점만 인정하며, 졸업시 학칙 제34조에 의거하여 졸업에 필요한 교양 및 전공이수 단위는 충족해야 한다.

② 기타 교류학점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총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17조(복교) ① 수학기간은 양교의 협약에 의한다.

② 유학생은 교류협약대학(교)과의 학생교류협약에 의거 수학기간이 종료된 후 복교하여야 한다.

③ 수학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 없이 복교하지 않을 시에는 징계사유가 된다.

제18조(준수사항) 파견(교환)학생은 우리나라와 교류협약 국가의 출입국관리법 및 제반 법규를 준수해야 하며 본 대학과 외국대학간의 협약에서 명시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9조(준용)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학칙 또는 관계법령을 적용하고, 그 외 필요한 사항은 총장의 승인을 받아 시행한다.

부 칙(2012. 10. 22.)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6. 4. 25)

이 개정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7. 2. 21)

이 개정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학 점 인 정 신 청 서

확 인	지도교수	학과(계열)장

결 재	담당자	교무담당	교학처장	총 장

성 명	한글				학 점	교류대학명	대학(교)	
	영문					학년도/학기	학년도	학기
생년월일		-			교류 사항	신청과목수	총	과목
학번		학년		신청학점		총	학점	
소속	학과	전공			총취득학점 /인정가능학점	학점/ 학점		
주소		우편번호(    -    )			전화번호 (    )			
교류대학 수강 신청과목								
소속 학과 (계열) 인정 과목	이수 구분	수강신청 교과목명 (영문표기)			학점	인정학기		
						/		
						/		
						/		
						/		
						/		
기타 의견								

국내·외 대학에서의 교과목이수와 이수학점 인정에 관한 규정 제34조의 2에 따라 위와 같이 학점인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인)

강원도립대학교총장 귀하